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등록금심의위원회 투명성 제고 근거 마련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43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회의 소집 통지 및 송부 의무 준수 강화	3
2. 전체 발언 내용의 회의록 작성, 보존 및 공개	6
3. 회의록 제출 의무 및 미제출시 제재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5. 21.
3. 회 부 일 : 2026. 5.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법령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안건만 기재하고 회의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등록금 책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전체를 공

개하기 위하여 발언 내용 전체를 공개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에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대학의 장이 회의록 공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11항, 제12항 신설 및 제15항 등).

Ⅲ. 검토의견

1. 회의 소집 통지 및 송부 의무 준수 강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등록금 책정 과정이 법정 절차에 따라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4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 · 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⑧ 제5항에----- ----- -----.

나. 검토의견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통지 및 송부에 대한 내용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하 “대학등록금규칙”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제11조제4항을 신설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의 소집 통지 및 송부 내용(회의 일시, 장소, 안건, 회의자료)과 기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은 현행 「대학등록금규칙」에 규정된 것과 동일함.
-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회의 소집 통지 및 송부 내용의 구체적인 근거가 교육부령에서 법률로 변경되고, 원칙적으로 회의 소집 통지 및 송부 의무를 준수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서,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므로, 회의 소집 통지 및 송부 의무 준수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회의 소집 통지 및 송부 관련 현행법령과 개정안 비교]

현행법령	개정안
(제11조제3항) •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제4항)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함
(제11조제12항)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현행과 같음 / 그 외의 내용 개정)
* 「대학등록금규칙(교육부령)」 (제2조제6항)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회의 개최 7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통지 - 회의 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송부 •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함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대학등록금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 개정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가천대 등 45개 기관에서는 「대학등록금규칙」과 중복되는 등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므로 해당 조항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검토의견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과 관련하여 현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을 기록하여 작성·보존하고, 이를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함.
 -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 등의 사유로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도록 함.
- 이와 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것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¹⁾ 외에도 등록금에 영향을 받는 학교 내 구성원들이 등록금 책정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현행 회의록 관련 사항 중 ‘발언 요지’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전체 발언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회의에서 진행된 모든 내용이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 투

1)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대학등록금규칙」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회의 내용 전체가 공개되는 것과 관련하여 위원의 발언이 위축되는 측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의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운영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회의록 관련 조항]

구분	내용
작성 내용	• (현행법) 회의의 일시, 장소, <u>발언 요지</u>, 결정 사항 등 → (개정안) 회의의 일시, 장소, <u>전체 발언 내용</u>, 결정 사항 등
공개 방법 및 기간	•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
비공개	• 비공개 가능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 비공개 절차: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 • 비공개 사항 공개 -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은 공시 -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

자료: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제9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7(회의록 공개)

- 참고로 회의록을 규정한 입법례에서 회의록 작성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는데, 현행법과 유사하게 발언 요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심의내용을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속기, 녹음, 녹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국가유산기본법」 등), 참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는 경우(「국민연금법」) 등이 있음.

[회의록 작성 내용 입법례]

구분	작성 내용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등)제6항	• 회의의 일시, 장소, <u>발언 요지</u> , 결정사항 등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제3항	•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u>토의내용</u> , 의결사항 등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제7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항	• 회의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u>발언 요지</u> , 결정사항 등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제1항	•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u>안건</u> , 의사, 출석한 위원(임원)과 교직원의 성명, 표결수, 그 밖에 위원장(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립학교법」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제1항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항	•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u>심의내용</u> , 의결사항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 녹음, 녹화 가능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제6항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제1항	• 회의의 일시, 장소, <u>토의내용</u> , 의결사항, <u>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 작성·보관</u> • 회의록 <u>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u>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가천대 등 45개 기관은 전체 발언 내용 작성·공개는 회의 발언 제약 등 위원회의 자율성 훼손 및 본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민감한 재정 현황, 경영 비밀에 대한 공개로 대학의 경쟁력 및 경영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대학평의위원회 등 대학 내 타 위원회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제한적인 조치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학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회의록 제출 의무 및 미제출시 제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하며, 미제출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u><신설></u>	⑪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u>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신설></u>	⑫ 제11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⑩ (생략)	⑬ (현행 제10항과 같음)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⑭ 제13항에도----- ----- -----

1.2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 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 ----- -----.
⑫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 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 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 정방법 및 제11항의 행정적·재 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 육부령으로 정한다.	⑮ ----- ----- ----제11항의 회의록 제출 방법 · 절차, 제13항의----- --산정방법, 제12항 및 제14항의- ----- -----.

나. 검토의견

- ☐ 개정안 제11조제11항 및 제12항은 등록금 책정과 관련한 심의 내
용이 모두 포함된 회의록(개정안 제11조제10항에 따라 등록금심의
위원회 회의록에 전체 발언 내용을 작성)을 교육부장관이 요청하고
대학의 장은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등록금 책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 다만 현행법은 제11조제9항에서 회의록의 작성·보존·공개 의무
를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서도 해당 내용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공개된 자료에 대해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할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임.

[회의록 관련 사항]

현행법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 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u>회의록을</u> <u>작성·보존하고</u>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 상 <u>공개하여야 한다</u> .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 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⑩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u>전</u> <u>체 발언 내용</u>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u>회의</u> <u>록을 작성·보존하고</u>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 년 이상 <u>공개하여야 한다</u> . 다만, 개인의 사생 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 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안 제11조제11항) 교육부는 회의록 제출 요청
및 제출 의무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공정성·투명
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조항 개정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안 제11조제12항) 다만 교육부와 가천대 등 45개 기관은 대학의
회의록 제출 의무는 ‘행정 절차적 사항’으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
초과’와 같은 실체적 위반 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제재하는 것은 처
별 수위가 과도하므로, 해당 조항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9